

2020년 출자·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96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9. 10.

제안자 : 평창군수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의 규정에 따라, '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의 얻고자 함.

□ 제안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□ 출연개요

(단위: 천원)

순번	출연기관	출연금	주요사항
계	6개	2,344,993	
1	강원연구원	50,000	평창군 중장기 비전 및 정책개발과 관련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협력사업비 지원
2	한국지역진흥재단	5,500	관광·문화·특산품 등 지역자원의 홍보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
3	평창군문화예술재단	1,054,801	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재단 경영을 위한 운영비, 자본형성비 등 지원
4	한국지방세발전연구원	4,692	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지방세 발전기금 지원
5	(재)강원테크노파크	200,000	관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, 인력양성, 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매출증대,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 지원
6	평창장학회	1,030,000	지역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학기금 지원

- 붙임 1. 출연금 사업 세부내용 1부.
2. 관계법령 발췌서 1부.

강원연구원 협력사업비 출연

주관부서	기획담당관	출연예상액	5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인명: 재단법인 강원연구원(원장 육동한)
- 일반현황
 - 개원: '94. 9. 1.
 - 설립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
 - 소재지: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5
 - 조직: 5실 6센터, 현원 43명(정원 48명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0년 출연예정금액: 50,000천원
- '20년 주요사업 내용
 - 도정 및 시·군정을 선도하는 정책연구 수행
 - 국정기조에 대응한 탄력적이고 선제적인 도 대응방안 마련(정책동향 TF 등)
 - 도 및 시·군의 주요 현안 관련 정책네트워크 사업(강원포럼 등)
 - 지역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(정책협의회, 시군코디네이터제 등)
 - 역점시책 추진,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(기획홍보TF 운영)

□ 출연 필요성

-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·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
- 그러나, 연구원 운영재원의 주 수입원인 수탁과제의 수입이 공개입찰제도의 정착에 따라 매년 감소되고 있는 상황임
- 또한 연구원 운영재원의 주요한 수입원인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하여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
- 이외에도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인력 채용, 물가 상승 등의 지출증가 요인이 있음

- 이에 따라 재정확충을 위해 수탁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경우 연구원 본연의 정책 연구 수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우려가 있음
- 정책·현안 대응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조사·연구를 통한 도정 지원 강화와 연구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 필요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13조(운영재원)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지방 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.

- 「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제5조(운영경비)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과실 및 연구원의 수익금 등으로 총당한다. ② 도 및 시·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총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출기초

- 출연액: 50,000천원
 - 공모사업 동향 분석자료 제공(월1회), 정책 연구과제 용역 수행(1건)
 - 포럼·토론회 실시(2회), 수시과제·정책메모 수행(2건)
 - 정책자문창구(코디네이터) 운영

□ 기대효과

- 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 지원 활성화
- 정책변화에 선제적인 맞춤형 정책수립과 국책사업 발굴 확대
- 정책·현안 대응성 및 활용도 높은 조사·연구로 군정지원 강화
-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(강원포럼 등)
- 군민의 행복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정책 발굴

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 출연

주관부서	기획담당관	출연예상액	5,5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: (재)한국지역진흥재단 (이사장 박경배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: '07. 8. 23
 - 설립근거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, 행자부 훈령 12호
 - 소재지: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
 - 조 직: 2실 1센터(현원 32명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0년 출연예정금액: 5,500천원
- '20년 주요사업 내용
 -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·조사·연구 및 자료 제공
 - 각종 매체를 통한 지역 문화·관광·특산물 홍보 및 상설판매장·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 특산물 판매 지원
 - 지역개발 자문·컨설팅·교육 등 인적역량 강화 지원사업

□ 출연 필요성

-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특산물·관광·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지역홍보센터의 설립 필요성 제기
- 행정자치부 산하재단으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설립
- 한국지역진흥재단을 관내 다양한 지역 자원·정보의 홍보채널로 활용하여 종합적 지역 진흥 도모

□ 출연 근거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
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행정자치부훈령 제48호)

□ 산출기초

- 출연금 배정기준
 - 인구 10만명 미만 시·군·구: 5,500천원

□ 출연시 기대효과

- 지역진흥시책 기획·조사·연구: 도·시군 기초 자료로 활용
- 관광·축제 등 지역홍보, 직거래 장터 참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 - 지역특산물 체험여행 스토리텔링 구성 등 콘텐츠화 및 온라인 홍보
 - 관광·축제 등 이벤트 조성 및 지원
 - 지역홍보센터 홍보 및 특산품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경제 활성화
- 중앙과 지방, 수도권과 지방, 지방 상호간 지역진흥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

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 및 사업비 출연

주관부서	문화관광과	출연예상액	1,054,801천원
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: 재단법인 평창문화예술재단(이사장 김도영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: 2012. 11. 30.(도 설립허가 2012.11.21)
 - 설립근거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」
 - 소재지: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54, 전시동 2층
 - 기 구: 15명(이사장 1, 이사 6, 직원 8)
 - 기본재산: 1억원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0년 출연예정금액: 1,054,801천원
- '20년 주요사업 내용
 - 생활문화동아리 육성
 - 평창청소년오케스트라 육성
 - 평창청소년 K-POP 교육프로그램 운영
 - 인문학 강좌
 - 작은미술관 운영
 - 찾아가는 공연전시 운영

□ 출연 필요성

- 평창송어문화체험관 등의 문화거점시설 운영을 통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
- 청소년문화예술교육 허브 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특성화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의, 문화, 교육 욕구 충족 및 문화복지 강화
- 감동을 주는 기획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필요
- 경영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문화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효율적 조직관리

□ 출연근거

- 「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」

제5조(재산) 재단의 재산(제3호에서 “재산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군의 출연금
2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현금·현물 및 그 밖의 재산
3. 재산의 운용수익금 및 사업수입금
4. 그 밖에 수입금

제6조(출연 등) ① 군수는 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 할 수 있다.

□ 산출기초

- 출연금: 1,054,801천원

가. 평창문화예술재단 운영비 514,801천원

나. 평창문화예술재단 사업비 540,000천원

- 생활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80,000천원
- 평창스노우오케스트라 운영 80,000천원
- K-POP 아카데미 운영 120,000천원
- 인문역사예술 운영 50,000천원
- 봉평콧등작은미술관 운영 50,000천원
- 2020 찾아가는 공연전시 운영사업 160,000천원

□ 출연 기대효과

- 평창군 문화예술교육, 창작지원 등을 통한 군민 문화역량 강화
- 군민 세대교류 및 일상축제, 공연 전시 등으로 문화 복지 실현
- 평창문화예술재단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문화행정서비스 제공
- 경영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문화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실 이전, 조직 확대 등의 효율적 조직관리

지방세발전기금 출연

주관부서	재무과	출연예상액	4,692천원
------	-----	-------	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: 한국지방세연구원 (대표 정성훈)
- 일반현황
 - 설 립 일: 2011. 2. 28.
 - 설립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5조
 - 소 재 지: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
 - 조직구성: 이사회, 기획조정실, 연구본부, 교육본부, 경영지원실
 - 운영인력: 41명(이사장 포함)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0년 출연예정금액: 4,692천원
 -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
- 사용용도: 인건비, 연구사업비, 경상운영비, 시설비 등

□ 출연 필요성

- 지방소비세·소득세 확대 발전, 신규세원 발굴 준비
- 비과세 감면 체계 개편,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제시
-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등

□ 출연근거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

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1. 1만분의 1.5

□ 산출기초

- 출연금 4,692천원 = 31,280,000천원 × 0.00015

□ 기대효과

- 지방세 신세원 발굴, 지방소득·소비세 발전 등 지방세제 이슈에 대한 전문 연구를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
- 지방의 관점에서 경제·사회 현상을 분석·연구하여 지방재정·세제의 역할과 방향 도출에 기여
-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배분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를 통하여 지방세의 비중 제고에 기여 등

수요자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

주관부서	일자리경제과	출연예상액	200,000천원
------	--------	-------	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: (재)강원테크노파크(원장 김성인)
- 일반현황
 - 설 립: '03. 12. 24.
 - 설립근거: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 및 「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
 - 소 재 지: 강원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-10
 - 조 직: 3단 1본부 1센터 2실 1협력관 20팀 82명
 - 주요기능: 지역산업정책기획, 지역혁신거점사업, 신소재·방재 기술지원, 인력양성, 연구개발, 국제공동연구 등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0년 출연예정금액: 200,000천원
- 기업별 최대 지원금액 10백만원 이하, 기업 자부담 10% 이상
- '20년 주요사업 내용(7개 분야)
 - ① 제품 및 포장 디자인 지원 사업
 - ② 기업홍보 지원 사업
 - ③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
 - ④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
 - ⑤ 국내·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
 - ⑥ 공용장비활용 수수료 지원 사업
 - ⑦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환경개선 지원 사업

※ 지원대상

- 평창군에 본사 또는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
- 2019년 이내 본사 또는 공장이전이 확정된 중소기업

□ 출연 필요성

- 국내·외 시장개척, 마케팅, 경영컨설팅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가 취약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- 평창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개선 및 마케팅 활동지원
→ 매출증대, 고용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

□ 출연 근거

-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

제17조(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·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출연(出捐)할 수 있다.

- 「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

제4조(재원조성)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1.정부 및 강원도, 시·군의 출연금품

□ 산출기초

- 출연금 200,000천원 = 40개 중소기업 × 5,000천원

□ 기대효과

-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
- 전략산업 및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
- 중소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평창장학회 장학금 출연

주관부서	교육체육과	출연예상액	1,030,000천원
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------

□ 출연대상

- 법 인 명: 재단법인 평창장학회(이사장 한왕기)
- 일반현황
 - 설립일자: 1990. 8. 10.
 - 설립근거: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소재지: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
 - 기 구: 이사회 10명(이사장 1, 이사 7, 감사 2)
 - 기금조성: 64억원

□ 출연대상 사업개요

- '20년 출연예정금액: 1,030,000천원
- '20년 주요사업 내용: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(90명, 150,000천원)

□ 출연 필요성

-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·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능함
- 군민들의 자발적 기탁에 의해 장학기금이 확충되고 있으나, 장학금 지원액보다 금액이 적어 군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
- 지속적인 금리인하로 인해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
- 많은 지역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장학기금 출연이 필요
- 장학금 수혜범위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 필요

□ 출연근거

- 「재단법인 평창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6조(장학기금의 출연) ① 군수는 장학회의 재원조성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□ 산출기초

○ 연차별 기금조성 목표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계	기조성	연 차 별 조 성 목 표					비고	
			소 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	2020년
합계	7,594	3,708	3,886	564	532	530	1,130	1,130	
군 출연금	5,490	2,440	3,050	330	330	330	1,030	1,030	
기탁금등*	2,104	1,268	836	234	202	200	100	100	

※ 기투자 기탁금 등: 설립기금, 기탁금, 이자수입 포함

□ 출연 기대효과

- 장학금 지급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, 나아가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
- 장학금 수혜범위 대폭 확대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으로 관내 인구증가 기여

관계법령 발췌서

①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2.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“공공기관”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
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
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 지방재정법 시행령

제30조(공익법인의 범위) ①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”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·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